

행정자료로 대체 가능한 조사표 항목에 관한 연구 (사업실적 항목 중심으로)

박성률¹⁾

요약

통계 작성 체계가 조사 기반에서 행정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에서는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단일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만을 이용해서 통계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러 행정자료의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자료 연계는 타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가통계 작성에 있어서 행정자료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문별(사업실적)행정자료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작성되고 있는 각 통계의 조사항목과 연관된 행정자료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통계 생산자들의 행정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행정자료의 조사항목 대체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용어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행정자료, 조사항목 대체, 사업실적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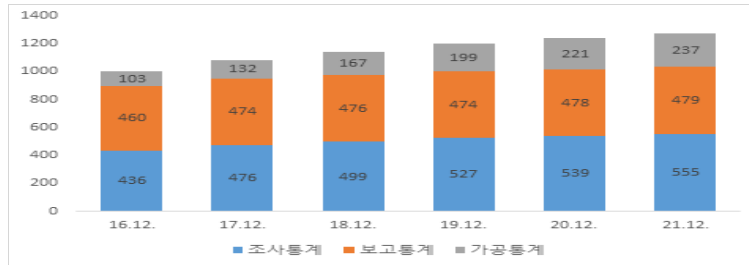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대부분 통계는 조사를 기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가 매우 일반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조사는 대면면접을 기본으로 우편, 팩스, email 등 보조 방법을 같이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조사통계의 환경은 통계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통계 유사·중복, 통계 예산 증가, 응답 부담 증가 등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다.

행정자료 활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통계 수도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승인 통계에서 조사통계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1,271종으로 조사통계가 555종(43.7%), 가공통계가 237종(18.6%)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가공통계의 성장이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과 2020년 12월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 동안 조사통계는 119종(27.3%) 증가한 반면 가공통계는 134종(130.0%)이 증가하였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6층,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방법연구실.
E-mail: srpark08@korea.kr



<그림 1.1> 조사 형태별 국가승인통계 현황(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특히, 지역통계 분야의 가공통계 작성 비중이 422.2%('16년 27종→'21년 141종)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으로 보건 분야가 120.0%('16년 5종→'21년 11종)로 나타났다.

이 추세를 보면 향후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통계들이 늘어남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때 이용되는 행정자료의 수도 더 많이 질 것으로 보아 관련 분야 연구와 통계 작성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고찰이 필요하다.

통계청은 2009년 이후 입수 행정자료 수가 늘어나면서 행정자료 간 연계, 데이터 점검 등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 발전하여 행정자료의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행정자료의 포괄 범위가 넓어져 조사항목 대체와 신규 행정통계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입수한 행정자료의 재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개인(기업) 정보의 보호에 따라 그 활용에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 행정자료들을 이용하면 통계작성기관에서 조사항목을 대체하거나 행정통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통계작성기관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계 예산 감소, 인력 부족, 응답자 부담 등은 조사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기에 더욱 행정통계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행정자료는 통계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속성 및 정보, 정제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자료 간 자료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를 제공받겠다고 해서 바로 통계를 작성할 수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 작성에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사업실적)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사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지 미리 판단해본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를 소개하고,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항목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특히 사업실적 조사항목과 관련된 행

정서식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사업실적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의 현황과 그 항목들을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5장에서는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사업실적 항목에 대해 행정자료를 적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원 자료와 비교하고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2.1 개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협의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통계 작성 시 행정자료를 우선 활용함으로써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생산·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의 공유로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 적용대상 통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살펴봐야한다. 국가승인통계는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로 나뉜다.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자료를 통해 작성한 통계, 보고통계는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 가공통계는 한 종류 이상의 통계와 추가로 수집한 통계자료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적용대상 통계는 조사통계로 한정하고 있다.

<표 2.1> 판단종류별 판단시점 및 절차

판단종류	대상	판단시점(법적근거)	절차
자체판단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 작성(변경) 승인(협의) 전 (제18조 제2항)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판단 시 작성(변경) 승인 신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통계 작성을 위해 관계 자료가 필요한 경우(제25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6조 제1항)	
판단의뢰	통계작성기관 전체	통계 작성(변경) 승인(협의) 전 (제18조 제2항)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의뢰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제26조 제1항)	

<표 2.1>에서 자체판단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를 첨부하여 통계작성(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통계심사조정과는 접수, 요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승인을 통보하는 체계이다. 행정자료 유무 혹은 판단이 곤란 시에는 통계데이터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먼저 진행할 수 도 있다.

판단의뢰의 경우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계데이터기획과에 의뢰한다. 통계데이터기획과는 판단결과를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심사조정과에 통보한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결과 확인 후 통계작성(변경) 승인 신청 후 통계심사조정과의 승인여부 결정을 통보 받는다.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계의 작성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있는지, 행정자료가 DB화 되어 주기적으로 수집 가능한지, 작성대상과 항목 등 용어 정의 및 개념이 서로 일치하는지,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자료가 통계작성 항목의 범위를 포괄하는지, 행정자료의 생산주기에 따라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통계작성 대상을 행정자료 연계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를 통해 통계작성기관에서 제시한 자료(조사 항목의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분석을 통해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2 사업체(기업체) 단위 조사항목 현황

<표 2.2>는 작성단위가 사업체(기업체)인 승인통계에서 행정자료로 활용 가능한(자체 판단, 판단의뢰) 작성항목들을 정리한 표로 일반현황에 대한 항목이 414개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종사자 정보 항목이 138개, 사업실적 항목이 105개, 산업분류 항목이 48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사업체(기업체)단위 이하 분류(소분류) 현황

대분류	중분류	조사항목	소분류(빈도 순위)
사업체 (기업체) 단위	일반현황	414	주소,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종사자정보	138	종사자수, 종사상지위, 연령, 사회보험 등
	사업실적	105	매출액, 영업비용, 수출액, 재무현황 등
	산업분류	48	사업의종류, 어업종류, 주생산품
	농어업정보	45	농업정보, 어업정보
	재무상태	38	자본금, 자산, 부채, 재무제표작성여부 등
	사업장정보	32	면적, 가맹점, 본지사 등
	기술정보	26	보유현황,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자료 출처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자료 분석)

<표 2.3>는 일반현황에 포함된 작성항목으로 사업체(기업체)의 주소,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이 포함된다. 이 항목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행정자료들이 존재하며, 그 중에서 법인세자료(329개)와 사업자등록자료(304개)가 대부분의 승인통계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 행정자료들은 조사의 성격에 따라 추가로 활용 가능한 자료로 항목 검증 및 참고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2.3> 사업체(기업체)단위 중 일반현황 행정자료 활용 가능 현황

(단위 : 개)

행정자료	빈도수	행정자료	빈도수
법인세자료	329	육묘업등록자료	3
사업자등록자료	30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장명세서	2
농어업경영체등록신청서	24	전자공시시스템	2
대학알리미공시정보자료	23	공간정보사업자등록부자료	2
대법원법원등기	22	기업부설연구소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12	4대보험	1
어업경영체등록대장	9	고용보험	1
경영공시자료	8	내수면어업면허증	1
어업허가명부	8	메인비즈확인서	1
가족관계등록부	7	수산종자생산업허가대장	1
벤처기업확인서	6	양식어업허가증.어선원부	1
학적부	6	영업허가증	1
이노비즈확인서	4	천일염인증서	1
어선원부	4		

(자료 출처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자료 분석)

<표 2.4>는 사업실적 관련 항목으로 매출액, 영업비용, 수출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는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사업체(기업체)별 신고 대상 행정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실적 항목의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개의 행정자료를 같이 이용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표 2.4> 사업체(기업체)단위 중 사업실적 행정자료 활용 가능 현황

(단위 : 개)

행정자료	빈도수	행정자료	빈도수
표준손익계산서·표준원가명세서	7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1
표준대차대조(재무상태)표	30	부속명세서	1
사업자등록자료	9	연구개발 활동조사표	1
법인세자료	6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1
수출신고자료	6	전자공시	1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3	표준합계잔액시산표	1
수출입통관자료	1		

(자료 출처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자료 분석)

<표2.5>는 재무상태 관련 항목으로 자본금, 자산, 부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표 2.5> 사업체(기업체)단위 중 재무상태 행정자료 활용 가능 현황

(단위 : 개)

행정자료	빈도수	행정자료	빈도수
표준대차대조(재무상태)표	41	법인세자료	3
표준손익계산서	8	사업자등록자료	3
표준원가계산서	4	전자공시시스템	2
표준합계잔액시산표	4	법인세자료사업소득신고(개인)	1

(자료 출처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행정자료 우선활용 제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경제 분야 승인통계에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항목은 당연히 사업실적 항목이다. 이 항목은 가장 일반적인 항목이면서 중요한 항목으로 모든 경제 관련 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 2.6> 사업실적 행정자료 활용 가능 현황(상위 5개)

사업실적 행정자료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대차대조(재무상태)표
사업자등록자료
법인세자료
수출신고자료

(자료 출처 :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자료 분석)

2010년 행정자료 입수가 본격화 되면서 행정자료 활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행정자료의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오승철[6]은 해외사례를 통해 행정자료 활용 방향, 이의규[9]는 외부기관에서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종성 등[6]은 해외 행정자료 구축 활용 사례를 통해 행정자료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자료 매칭과 관련하여 이영섭 등[7]은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 매칭 기법과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를, 박범수[2]는 매칭기법으로 성향점수를 소개하고 실증분석 결과로 검증하였다. 또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자료 검증과 관련하여 임주원[11]은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정보에 대하여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검증을 연구, 김낙년[1]은 조사결과에 행정자료 보정을 통해 피조사자들의 응답 편향 분석에 대한 연구, 박형준[3]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대푯값 비교와 향후 행정자료 활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 내 조사의 개선을 위해서 안태현[4]은 광업제조업조사에서 단독 법인의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확인, 이은경[8]은 어업총조사와 어업통계조사의 주요항목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이정수[10]는 인구주택총조사 DB 구축에 행정자료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외 국가통계작성기관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성을 확인 및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확인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결과를 원자료와 비교를 함으로써 행정자료 활용을 실체화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 더 나아가 통계작성기관(통계청 외)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사업실적 항목 대체 사례를 소개하여 응답 거부 해소와 자료처리 기간 단축 등 조사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자료별 작성 가능 지표

3.1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3.1.1 개요 및 포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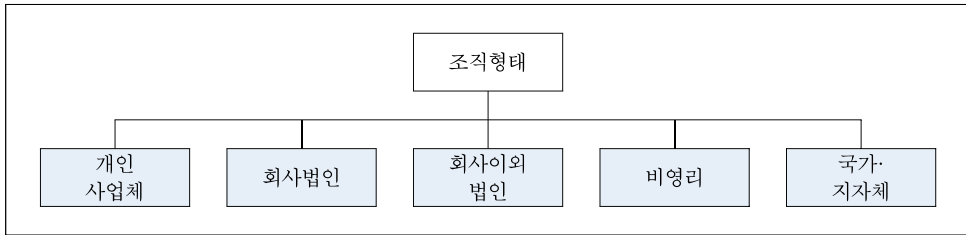
사업자는 사업 목적(영리 혹은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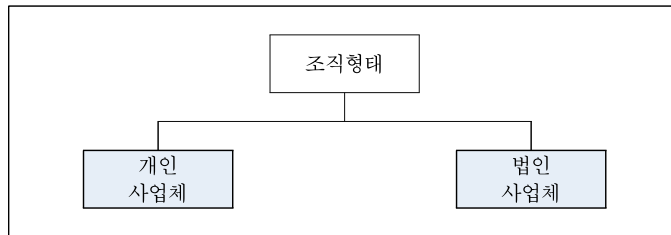
사업자등록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²⁾ 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³⁾ 사업자는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비활동 사업자, 개인운수업자, 임대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조사자료 보다 많은 사업자가 존재하게 된다.

2)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국민연금법)

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각 지점의 사업자번호는 말소되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림 3.1> 사업자등록자료 포괄 범위



<그림 3.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포괄 범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자등록신청서는 크게 인적사항과 사업장현황으로 파악한다. 인적사항에는 사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체를 구분하는 고유한 식별값을 가지게 된다. 사업장 현황 자료에는 업종(표준산업분류 파악을 위해 활용), 사업장 면적 정보, 임대차 정보,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사업장 정보뿐만 아니라 타 행정자료와의 유무 여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사업장 소재지, 발급 사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자 여부 등을 포함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와 본점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적재된 데이터 베이스를 사업자등록자료라고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행정서식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본점 이외 사업장의 정보를 입력하는 서식이다. 개인의 경우 종된 사업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 상호명, 소재지, 업종 등을 입력한다. 법인의 경우도 종된 사업자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각 사업장별 상호, 사업장 대표자, 사업장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입력하고 있다.

3.1.2 연계변수와 작성 가능 지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 행정서식은 경제 분야 모집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타 행정자료 및 통계청의 통계기업등록부와 연계를 위해 활용 가능한 일반적인 변수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행정 및 통계 자료에서 사업장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간 중복이 발생되어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자 주민등록

록번호, 종된사업장일련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사업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을 함께 고려하여 새로운 연계변수를 생성하여 연계 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통계 작성 가능 지표는 크게 사업장 일반 현황과 본·지사 관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장 일반 현황에는 대표자명, 대표자성별, 연락처, 소재지, 산업분류 등을 조사 없이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종된사업장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기업의 본·지사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산업구조 통계의 뼈대를 만들 수 있다. 행정 서식 중 사업장 면적과 임대차 명세 등의 자료가 추가로 입수가 된다면 사업장별 특성 항목과 사업실적의 영업비용 중 임차료 등의 항목도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표 3.1>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의 연계변수와 작성가능항목

행정자료	연계 변수	주요 항목	작성 가능 항목
사업자등록자료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자등록번호, 종된사업자일련번호	사업자 일반정보 업태, 종목	다사업체의 본·지사 관계 작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에 참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		사업자 일반정보 업태, 종목	다사업체의 본·지사 관계 작성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에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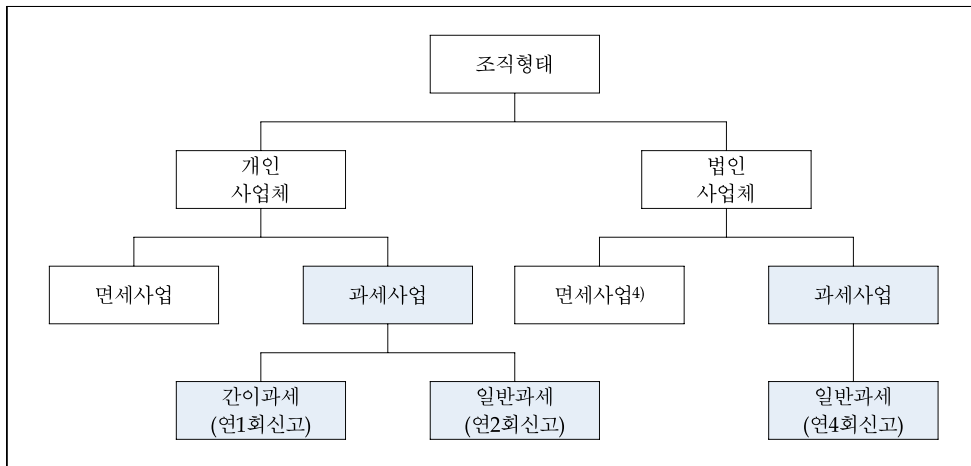
3.2 부가가치세(간이, 일반) 및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3.2.1 개요 및 포괄범위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크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받고 법인에게에는 적용 받지 않는 제도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 두 유형은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의 차이이며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에 비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지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다음의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림 3.3> 부가가치세(법인, 개인, 간이) 포괄 범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간이과세) 행정서식은 사업자 일반정보, 신고내용, 과세표준 명세, 면세수입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자 일반정보에는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내용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세표준 명세와 면세수입금액에는 업태, 종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일반과세) 행정서식은 사업자 일반정보, 신고내용, 과세표준 명세를 기본적으로 작성하고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면세사업수입금액 등은 해당 사업장만 신고하고 있다. 사업자 일반정보는 간이과세와 동일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내용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발생 경로에 따른 금액들을 구분하여 신고, 과세표준 명세와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간이과세와 동일하다.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행정서식은 다사업체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서식으로 사업장 일반정보,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정보에는 본·지수 구분, 상호,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고 매출세액에는 과세와 영세율에 따른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3.2.2 연계변수와 작성 가능 지표

부가가치세 행정자료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장별 자료에서 사업장별 연계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변수는 사업자등록번호이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변수가

4) 면세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1월~6월분은 7월25일까지, 7월~12월분은 그 다음해 1월25일 까지)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긴 하지만 일부 다사업체의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경우 연계에 참고할 변수로 사업장 대표자 성명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행정자료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종원사업자일련번호를 연계 가능 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행정자료는 연계 키 중복이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수로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법정동 코드를 이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국가승인통계 조사항목으로 작성 가능한 항목은 사업체 전체 매출액이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는 업태별 과세표준금액을 입수 받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주·부사업도 파악이 가능하다.

<표 3.2> 부가가치세 연계변수와 작성가능항목

행정자료	연계 변수	주요 항목	작성 가능 항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 참고
		과세표준합계금액	매출액 관련 항목 작성
		업태별과세표준금액	주·부사업 매출액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 종원사업자일련번호	과세표준합계금액	매출액 관련 항목 작성

3.3 사업소득신고자료(간편장부, 복식기장)

3.3.1 개요 및 포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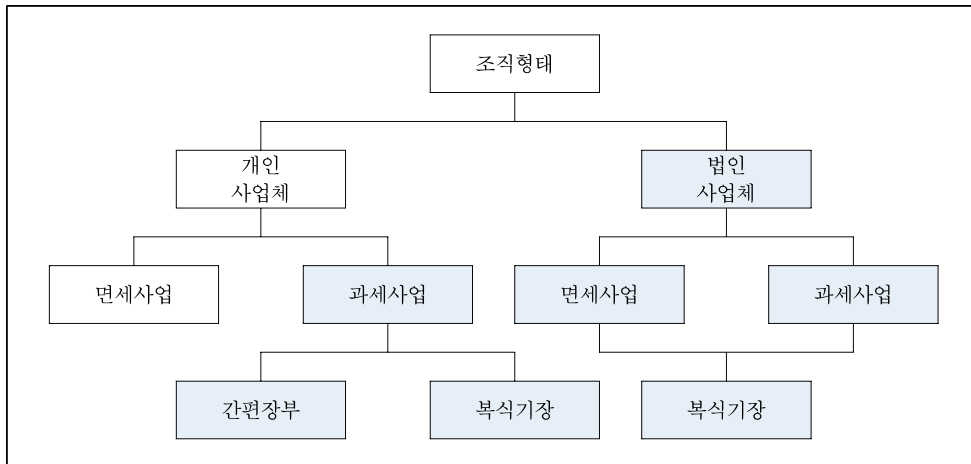
당해연도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표 3.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한다. 소득세 신고 대상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기장 의무자로 구분한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표2.5>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기장 대상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 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관해야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그림 3.4> 사업소득신고자료(복식기장, 간편장부) 포괄 범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소득신고 간편장부 행정서식은 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로 되어 있다. 소득금액계산서는 사업장 일반정보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의 합계 금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 반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는 장부상 수입금액, 필요경비 내 매출원가, 제조비용, 일반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고를 받고 있다.

사업소득신고 복식기장 행정서식은 사업장 일반정보에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포함되어 있고, 와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가 포함된다. 일반정보에는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이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 행정서식 중 사업소득신고 간편장부와 복식기장은 사업실적 항목을 세분화하여 신고를 하는 자료이다. 특히 복식기장의무대상자는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사업체별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3.2 연계변수와 작성 가능 지표

사업소득신고자료 간편장부와 복식기장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연계 변수로 활용이 가능하고, 간편장부는 대표자를 연계 키에 추가로 이용하여 자료 연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소득신고자료는 소득세법의 행정자료 중 다른 행정자료보다 더 많은 사업실적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출액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 사업체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파악이 가능하며, 복식기장 대상 사업체는 표준손익계산서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세부 항목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세부 항목

들이 포함되어 있어 산업구조통계에서 세분화된 영업비용 항목,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항목을 이용하여 유형자산 관련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표 3.4> 사업소득신고 연계변수와 작성가능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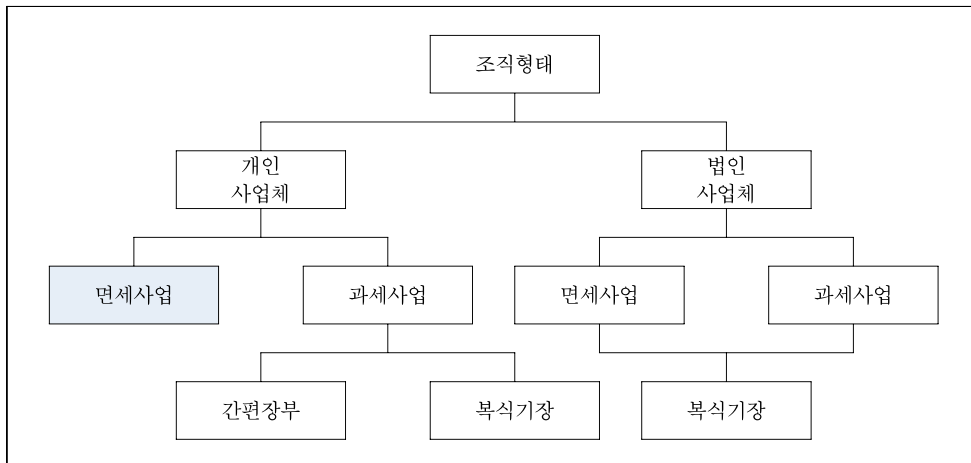
행정자료	연계 변수	주요 항목	작성 가능 항목
사업소득 (간편장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매출액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매출액 작성
		일반관리비,매출원가	영업비용 내 항목별, 합계액 작성
사업소득 (복식기장)	사업자등록번호	표준대차대조표	자본금, 유형자산 등 항목 작성
		표준손익계산서,	매출액, 판매비와 관리비별 항목 작성
		표준원가명세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부 항목 작성

3.4 사업장현황신고서

3.4.1 개요 및 포괄범위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행정서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즉, 면세사업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나 일반과세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절 면세의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명시된 사업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연예인 등이 포함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림 3.5> 사업장현황신고서 포괄 범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업장현황신고 행정서식은 사업자 일반정보, 수입금액(매출액) 및 구성 명세, 적격 증명 수취금액,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정보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사업자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는 업태 및 업종별 수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 수입금액(매출액) 및 분야별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입금액 구성 명세와 적격증명 수취금액 등 수입 발생 경로들을 파악할 수 있고,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를 통해 수입금액의 분배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

3.4.2 연계변수와 작성 가능 지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개인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받는 서식으로 사업자 기준에서 타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변수는 사업자등록번호이고, 개인 기준에서 타 행정자료와의 연계 가능 변수는 구축항목 중 대표자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 면세사업자 분야에서 업태 및 종목과 수입금액 합계를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수입금액(매출액) 관련 항목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업태 및 종목별 수입금액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주·부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도 파악이 가능해 보인다.

<표 3.5> 사업장현황신고서 연계변수와 작성가능항목

행정자료	연계 변수	주요 항목	작성 가능 항목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성에 참고
		업종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 전체 및 주·부사업 매출액

3.5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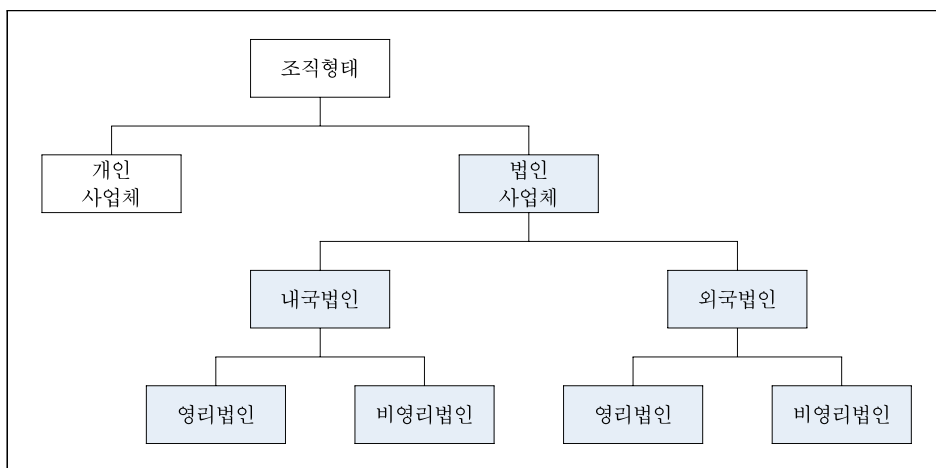
3.5.1 개요 및 포괄범위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연도 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 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은 아래의 법인과 법인세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비영리 내국 법인은 법인세법에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림 3.6> 법인세 포괄 범위(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 행정서식은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첨부 서류를 통해 신고된 항목을 참고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한다. 이 행정서식에는 기업체 일반정보, 법인 구분 및 종류, 법인세 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다. 제출 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당해년도 법인의 유동자산, 매출액, 영업비용 등이 세밀하게 작성되어 있다.

3.5.2 연계변수와 작성 가능 지표

법인세 자료는 단독 법인 및 다사업체 본사(점)에서 신고하는 자료로 이 행정자료의 사업체등록번호는 본사 정보로 이 내용을 참고하여 타 행정자료와 연계 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다사업체의 본사와 지사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본·지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법인세 자료를 활용한 사업실적 부문 통계 작성 항목으로 유·무형자산, 자산 및 부채, 매출액, 판매비와 관리비, 원가명세 등이 가능하다. 당해년도 데이터와 이전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계열 관련 항목 작성도 가능하다.

<표 3.6> 법인세 연계변수와 작성가능항목

행정자료	연계 변수	주요 항목	작성 가능 항목
법인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참고) 연결모법인사업자등록번호	표준대차대조표	- 유·무형자산 - 자산 및 부채 총계 - 자본금 등
		표준손익계산서	- 전체 및 세부 매출액 -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 내역
		제조원가명세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세부 내역

4. 통계별 행정자료 대체 가능 지표

4.1 대상 선정

이 절은 승인통계의 조사항목 중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연구로 조사 설계가 비교적 간단한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은 ①작성 단위는 기업체(보통 기업의 행정신고는 본사에서 기업 전체의 실적을 신고), ②작성기준은 1년 이상(행정신고는 1년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가 많아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고려)으로 설정하였다.

표본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표 4.1>은 표본규모가 전수인 통계(11종)로 중앙행정기관 6종, 지방자치단체 1종, 지정기관 4종이고, 작성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 4종, 정보통신 2종, 농림·수산·에너지·건설·지역통계 각 1종씩 나타났다.

<표 4.1> 기업체 단위 전수 분야 국가승인통계 현황(11종)

연번	기관종류	기관명	통계명	통계분야	전수/표본
1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과학·기술	전수
2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과학·기술	전수
3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	전수
4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	전수
5	중앙행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	농림	전수
6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통계조사	수산	전수
7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제조업실태조사	지역통계	전수
8	공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연료산업조사	에너지	전수
9	협회/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통계조사	건설	전수
10	협회/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정보통신	전수
11	기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과학·기술	전수

(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표 4.2>는 표본규모가 확률표본 통계(22종)로 중앙행정기관 15종, 지정기관 7종이고, 작성 분야는 기업경영 7종, 정보통신 4종, (과학·기술) 2종, 노동 2종, 임금·(교통·물류)·(범죄·안전)·(도소매·서비스)·금융·환경·건설 각 1종으로 나타났다.

<표 4.2> 기업체 단위 확률 표본 분야 국가승인통계 현황(22종)

연번	기관종류	기관명	통계명	통계분야	전수/표본
1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	확률표본
2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노동	확률표본
3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융합실태조사	정보통신	확률표본
4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정보통신	확률표본
5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중소기업실태조사	정보통신	확률표본
6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실태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7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8	중앙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물류비실태조사	교통·물류	확률표본
9	중앙행정기관	소방청	소방산업통계조사	범죄·안전	확률표본
10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11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12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13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과학·기술	확률표본
14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도소매·서비스	확률표본
15	중앙행정기관	특허청	지식재산활동조사	과학·기술	확률표본
16	공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노동	확률표본
17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금융	확률표본
18	연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정보통신	확률표본
19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20	연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실태조사	환경	확률표본
21	협회/조합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건설	확률표본
22	기타기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실태조사	기업경영	확률표본

(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활용 가능 분석을 위해 전체 33종 승인통계(전수 11종, 확률표본 22종)를 대상으로 승인통계별 조사항목의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4.2 통계별 조사항목 현황

전수분야 통계들의 조사표별 조사항목 전체 현황과 행정자료 대체 현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조사항목을 대항목, 중항목, 입력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대항목은 유사 항목을 묶어 놓은 집단으로 기업일반현황, 재무현황 등을 말하고, 중항목은 실제 응답자가 응답할 수 있게 설계된 조사 항목, 입력항목은 중항목 내 응답자가 실제로 응답을 작성하는 최소 단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행정자료 대체 가능 항목이 가장 많은 통계는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로 전체 입력항목

(725개) 중 151개의 입력항목이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하다. 대체 가능한 항목이 많은 이유는 조사표 설계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양식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3> (전수 분야) 통계별 조사항목 대체 가능 현황

(단위 : 개)

연번	통계명(부분별 조사표)		조사항목 수				
			대항목	중항목	입력항목		
					대체 가능	대체 가능	
1	연구개발활동조사						
	①	기업체(일반)	5	14	1	367	3
	②	기업체(건설업)	5	15	1	371	3
	③	기업체(소프트웨어개발업)	5	15	1	369	3
	④	대학	4	14	-	329	-
	⑤	연구기관 및 연구조합·협회	4	14	1	315	3
	⑥	의료기관 및 대학병원	4	14	1	314	3
2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①	이공계대학	5	29	-	558	-
	②	공공·민간기업 연구기관	5	32	-	571	-
3	우주산업실태조사						
	①	기업체	8	18	-	379	2
	②	연구기관	7	18	-	381	1
	③	대학	7	14	-	407	-
4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①	디지털사이니지	4	14	-	113	-
	②	실감미디어	4	13	-	87	-
	③	소셜미디어	4	13	-	84	-
	④	가상증강현실미디어	4	14	-	93	-
	⑤	OTT서비스	4	17	-	120	-
5	농업법인조사		-	18	1	154	22
6	원양어업통계조사		4	21	3	183	74
7	부산광역시제조업실태조사						
	①	관리부문	5	45	2	188	32
	②	사업부문	4	55	2	122	2
8	신재생에너지설비·연료산업조사		5	19	-	78	3
9	전기공사업통계조사						
10	정보통신공사업통계조사						
	①	일반사항	-	6	1	11	1
	②	결산사항	-	3	-	30	1
	③	실적보고서	-	20	-	21	-
11	방산업체경영분석조사		7	19	-	725	151

(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확률표본 분야에서 행정자료 활용 가능 항목이 많은 통계는 중소기업실태조사로 전체 입력항목(중소서비스업 299개, 중소제조업 342개)은 각 중소서비스업 240개, 중소제조업 240개의 항목이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대체가 가능하다. 전수 분야와 마찬가지로 조사항목 구성이 행정서식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대체 항목의 수가 많은 이유이다.

이처럼 승인통계의 조사표 설계에 있어서 조사항목에 행정서식을 반영하면 행정자료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차선택이므로 향후 작성기관에서 조사항목 설계 시 행정서식을 참고하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 (확률 표본 분야) 통계별 조사항목 대체 가능 현황

(단위 : 개)

연번	통계명(부문별 조사표)	조사항목 수				
		대항목	중항목	입력항목	대체 가능	대체 가능
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	12	-	43	-
2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4	44	-	122	3
3	SW융합실태조사					
	① 서비스업	5	41	-	201	7
	② 제조업	5	41	-	196	7
4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① 정보보안 기업	7	34	-	164	5
	② 물리보안 기업	7	32	-	157	5
5	ICT중소기업실태조사	9	54	3	226	24
6	협동조합실태조사	9	126	1	228	9
7	중견기업실태조사	9	73	4	214	19
8	기업물류비실태조사	4	23	-	135	8
9	소방산업통계조사	6	31	2	95	9
10	기업및공공기관의가족친화수준조사	8	67	1	129	6
11	창업기업실태조사	4	55	4	120	22
12	중소기업실태조사					
	① 전업종 공통	4	24	-	38	-
	② 중소서비스업	3	16	5	299	240
	③ 중소제조업	3	32	5	342	240
13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7	60	-	291	10
14	소모성자재납품업실태조사	5	39	-	99	6
15	지식재산활동조사					
	① 기업	3	35	-	143	4
	②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3	30	-	134	-
16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① 기본조사	2	13	-	55	3
	② 장애인 고용 기업체	11	123	2	464	30
	③ 장애인 미고용 기업체	11	110	3	334	30
17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9	89	3	169	13
18	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5	36	3	151	10
19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① 본사용	4	97	-	297	1
	② 근로자	-	42	-	130	-
20	환경기술실태조사	10	28	-	195	5
21	정보통신공사업경영분석	-	4	3	448	434
22	여성기업실태조사	10	105	1	206	8

(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4.3 주요 통계별 (사업실적)항목 대체 가능 현황

통계작성기관에서 설계한 조사항목 양식에 따라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업실적은 민감한 조사항목이기 때문에 통계 작성 목적에 따라 단순 설계(총매출액), 가공 설계(수출액 비중), 세분 설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먼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업 단위 신고자료(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등)를 기반으로 설계한 조사항목은 당장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원양어업통계조사,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자산 등 세부 항목은 행정서식에 따라 설계되었기 때문에 바로 반영할 수 있다.

다음 기업 총매출액, 자본금 등 특정 항목을 조사하거나 수출액 비중, R&D 비중 등 가공된 형태의 조사항목은 행정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분야 매출액 등의 항목은 행정서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에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표 4.5> 주요 통계별 조사항목 대체 가능 현황

통계명	기업체 조사표 (조사항목)	대체 가능	비고
우주산업 실태조사	자본금, 총 매출액	②	- 기업 전체 총매출액과 자본금에 대해 부분 대체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활용
	총 예산액	②	- 기업 전체 총예산액에 대해 부분 대체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손익계산서 등 활용
농업법인 조사	설비투자 실적	②	- 당해연도 설비투자 실적에 대해서만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등 활용
원양어업 통계조사	재무상태표	①	- 기업 전체 재무상태표는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 가능 항목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손익계산서	①	- 기업 전체 손익계산서는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 가능 항목 - 행정자료는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제조원가	①	- 기업 전체 제조원가는 행정자료 활용하여 작성 가능 항목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방산업체 경영분석 조사	총자산, 자본금	②	- 총자산과 자본금은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매출금액	②	- 기업 전체 매출액과 증감율은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신규 설비투자 실적	②	- 회사 전체의 설비투자 실적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전년 설비투자	②	- 회사 전체의 설비투자 효율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신규 연구개발투자	②	- 회사 전체의 신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재무상태표	②	- 회사 전체의 재무상태표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손익계산서	②	- 회사 전체의 손익계산서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제조원가명세서	②	- 회사 전체의 제조원가명세서에 대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 행정자료는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②	-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항목은 행정자료 활용 가능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법인세 등	①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행정자료 활용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통계명	기업체 조사표 (조사항목)	대체 가능	비고
중견기업 실태조사	R&D, 설비투자	②	- R&D투자와 설비투자 금액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①	-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비중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대차대조표를 활용하여 자산별 비중 계산 후 활용)
	해외수출 실적	①	- 해외수출 여부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해외수출 여부 파악)
창업기업 실태조사	자본, 부채 규모	①	- 자본총계, 부채총계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손익현황	①	- 매출액, 영업이익, 금융비용, 당기순이익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국내 판매액, 수출액	①	- 국내 판매액, 수출액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중소기업 실태조사	설비투자	②	- 자산유형별 설비투자총액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대차대조표 활용)
	연구개발 총액	①	- 연구개발총액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매출액	②	- 해외 매출액, 국내 매출액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손익계산서 활용)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원가명세서	①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내 모든 항목 행정자료 대체 가능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활용)

※ ①행정자료 완전 대체 가능 항목, ②행정자료 부분 대체 가능 항목

(자료 출처 : 통계정책관리시스템)

5. 행정자료 적용 사례

5.1 대상 통계 선정

실제 승인통계의 조사항목 중 행정자료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승인통계는 중소기업의 경영실적 및 인력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수립과 구조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승인통계는 1967년 최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⁵⁾ 제21조 제1항에 있다.

<표 5.1> 중소기업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내용
통계종류	조사통계(지정통계)
조사대상	매출액 5억원 초과 중소기업(단, 산업대분류 I, P는 매출액 3억원 초과)
조사단위	기업체
조사범위	전국사업체조사(기업체변환자료)와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대상규모	시계열항목_제조업(7,500개), 시계열항목_서비스업(8,500개), 일반항목(5,000개)
조사주기	1년
조사기준일	작성기준년도 12. 31. 현재
조사기간	작성기준년도 익년 5월~9월
조사방법	현장방문조사(이메일, 팩스조사 병행)
조사체계	기업체 → 외주(용역) → 중소기업중앙회(위탁) → 중소벤처기업부
조사항목	
제조업	업체개요, 일반실태, 인력실태, 재무제표
서비스업	업체개요, 일반실태, 인력실태, 재무제표
일반항목	업체개요, 인력활용실태, 해외진출실태, 사업전환실태 등
공표	공표주기(매년), 공표시기(매년 말), 공표범위(전국단위로 업종별×매출액규모별 공표)
예산	약 11.6억원

(자료 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상 제조, 서비스 분야로 구분하고 한국표준산업대분류 기준 10개 대분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여기서 모집단 비중이 작은 업종 및 공공서비스 관련 일부 업종과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의거 업종별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표본추출틀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개인기업과 기업체모집단 자료의 법인기업을 기본으로 한다. 표본추출틀 확정을 위하여 기업체변환, 업종추출, 회사이외법인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 제외, 중소기업범위기준 초과 제외, 매출액 하한기준 이하 기업 제외 등의 세부 절차를 통해 최종 조사모집단을 확정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실태조사) 제1항 :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표 5.2> 표본추출틀 세부 작성 절차

구분	내용
①기업체변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체모집단 자료를 기업체단위로 변환하여 기업체 단위 표본추출틀 작성
②회사이외법인 제외	-기업의 조직형태에서 ‘개인’과 ‘회사법인’은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③업종 추출	-조사모집단으로 정의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조사 대상 업종으로 추출
④중소기업범위기준 초과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공공기관 제외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 및 중견기업을 법인등록번호로 식별하여 제외 공공기관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식별하여 제외
⑤매출액 하한기준 이하 기업 제외	-업종별로 매출액, 종사자수, 업체수의 비중을 고려하고, 시계열 유지를 위해 매출액이 5억 이하인 기업체를 제외 후 최종 모집단 확정

(자료 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5.2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행정자료 활용 검증을 위해 먼저 모집단을 구축해야한다. 통계청에서 입수하고 있는 경제분야 행정자료를 연계·분석하여 만들어 놓은 통계기업등록부(SBR)를 기준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개인기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법인기업체는 통계청 기업체모집단을 표본추출틀로 이용한다.

최종 모집단 설계를 위하여 기업체변환, 개인·회사법인 선택, 업종 추출, 중소기업 범위 초과 제외, 상호출자·공공기관 제외, 매출액 기준 모집단 절차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통계기업등록부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최종 모집단 설계 시 동일한 과정을 적용하여 만들고자 한다.

<표 5.3> 중소기업실태조사와 행정자료DB 최종 모집단 비교

(단위 : 개)

항목	중소기업실태조사	행정자료 DB	비고
원자료	3,950,169	9,491,050	
		6,795,276	①활동기업 선택
①기업체 변환	3,804,560	6,485,780	②기업체 변환
②개인, 회사법인 선택	3,556,287	6,267,676	③개인, 회사법인 선택
③업종 추출	2,777,849	4,948,917	④업종 추출
④중소기업 초과 제외, 상호, 공공기관 제외	2,773,225	4,933,252	⑤중소기업 초과 제외, 상호, 공공기관 제외
⑤매출액 기준 절차, 최종 모집단	508,288	661,726	⑥매출액 기준 절차, 최종 모집단

(자료 출처 : 중소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2018년 기준 통계기업등록부(사업자등록기준) 전체 자료는 9,491,050개로 사업자등록 자료를 기초로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만든다. 중소기업실태조사 최종 모집단 설계를 위하여 다음 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 통계기업등록부 내 활동기업을 선택한다. 통계기업등록부 항목에는 활동, 비활동, 폐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비활동은 종사자수와 매출액 합계가 null인 기업체를 말하며, 모집단 구축을 위해서 활동인 기업체만 선택한다.

둘째,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작성단위와 동일하게 기업체 단위로 변환한다. 통계기업등록부의 단위는 사업체 단위로 기업체단위 변환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내 기업체 키를 이용한다.

셋째, 조직형태 중 개인과 회사법인을 선택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개인과 회사법인으로 통계기업등록부의 항목 중 조직형태에서 해당 부문만 선택한다.

넷째, 중소기업실태조사 대상 업종만 추출한다. 전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업종 외는 통계기업등록부 항목의 산업분류를 이용하여 모집단 구축에서 제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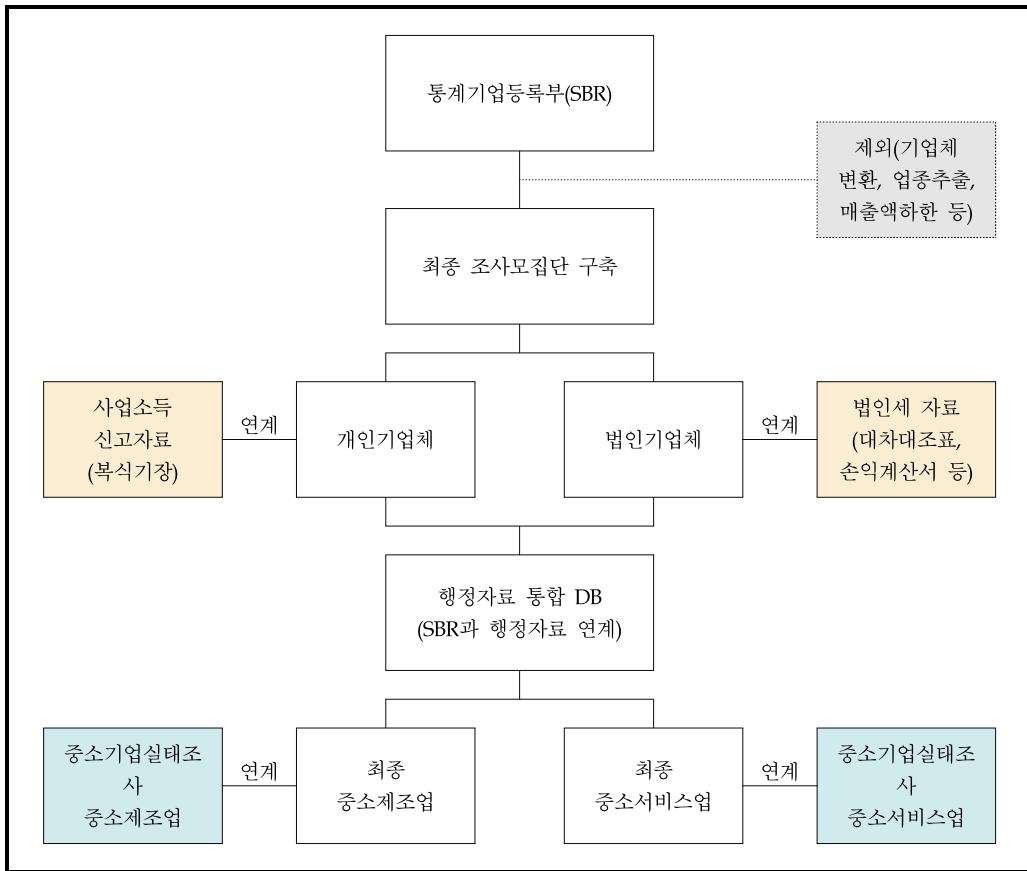
다섯째, 중소기업 초과 및 상호출자,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소기업 범위(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 및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매출액 규모를 업종에 따라 6개~7개로 구분한다.

여섯째, 조사 대상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매출액 하한 기준을 제외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업종별로 매출액, 종사자수, 업체수의 비중을 고려하고 시계열 유지를 위해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체를 제외 후 최종 모집단을 작성한다. 단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매출액 기준이 3억 이하를 제외한다. 통계기업등록부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업종별 매출액 하한을 제외한 후 모집단을 확정한다.

최종 모집단 확정 결과, 통계기업등록부는 661,726개로 중소기업실태조사 508,236개 대비 153,438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자료의 최종 모집단의 차이는 기업체 정의의 차이(물리적 장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실태조사의 통계 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기업등록부에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맞는 조사모집단을 구축한다. 통계기업등록부는 사업자등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로 여러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항목들을 추가해 놓은 자료이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는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주로 모집단 명부로 활용을 하고 있다.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추가 행정자료의 연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적 항목 대체를 위해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하였다. 조직형태에 따라 개인기업체는 사업소득신고자료(복식기장), 법인기업체는 법인세 관련 자료(법인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를 추가로 연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5.1> 사업실적 분야 행정자료 DB 구축 프로세스

5.3 결과 비교

중소기업실태조사(조사) 표본과 통계기업등록부(행정) 최종모집단 간 연계율은 약 95%로 높게 나타났고, 연계된 자료를 이용하여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비교 방법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와 통계기업등록부 결과 차이를 나타내는 절대 상대오차 비율을 활용하였다.

<표 5.4>에서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인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총계의 절대 상대오차 비율을 살펴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분류나 산업대분류별 절대 상대오차의 값이 작게 나타나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유형자산은 산업대분류 L(부동산업)과 G(도매 및 소매업)에서, 무형자산은 L(부동산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산총계는 L(부동산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표 5.4> (재무상태표)연계 자료의 추정값 비교(절대 상대오차 비율)
(단위 : %)

KSIC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총계
제조업	0.02	0.05	0.03
서비스업	0.14	0.42	0.13
G	3.01	0.49	0.95
I	0.18	0.64	0.31
J	0.76	0.03	0.95
L	5.13	3.99	3.08
M	0.13	0.32	0.18
N	0.64	0.51	0.27
P	0.29	1.07	0.04
R	0.03	1.71	0.00
S	1.57	0.81	1.31

<표 5.5>에서 손익계산서 대부분 항목 역시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 손익은 1%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행정자료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표 5.5> (손익계산서 항목)연계 자료의 추정값 비교(절대 상대오차 비율)
(단위 : %)

KSIC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손익	영업외수익
제조업	0.02	0.02	0.10	0.29	2.00
서비스업	0.20	0.03	0.44	1.37	2.18
G	0.20	0.11	0.22	2.01	2.46
I	0.12	0.96	0.31	2.62	0.45
J	0.23	0.95	1.51	0.95	2.78
L	0.40	0.05	0.14	3.66	2.26
M	0.21	0.04	0.45	0.87	1.28
N	0.23	0.20	0.25	-	1.60
P	0.56	1.47	0.92	0.20	-
R	0.02	0.56	0.23	0.52	1.94
S	2.07	1.02	2.11	7.44	1.95

중소기업실태조사와 같이 행정서식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조사항목으로 설계된 통계들은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 정합성에 문제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향후 행정자료를 통계 작성에 이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통계 작성 체계가 조사통계에서 행정통계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점차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작성기관에서는 조사환경의 어려움과 통계 예산의 감소 등을 이유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자료를 이용할 때 여러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 행정자료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자료를 연계하는 규칙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 작성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 통계에서 주로 활용 가능한 조사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행정자료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통계 작성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항목의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이 행정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해야한다.

첫째, 행정자료는 신고 대상 포괄 범위의 차이가 있어 여러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연계 정확성 확보, 중복 항목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통계 작성 단위 등이다.

둘째, 여러 개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활용할 때 간혹 연계 변수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체 연계 변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다 사업체의 경우 신고의 편리를 위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연계 변수를 보조하기 위하여 종된사업자일련번호, 대표명, 주소, 본점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연계율을 높여야 한다.

셋째, 행정자료별 가지고 있는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이 발생될 경우(매출액 등) 활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의 행정자료 활용 경험을 토대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자료를 우선순위로 하고,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신고(간편장부, 복식기장) 자료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처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료는 부가가치세보다 자료가 정확하고, 신고 시 관련 제출 서류(표준 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가 첨부되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재 입수된 행정자료는 기업체 전체 기준이므로 사업체단위 작성 시 정합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 행정자료의 입수도 필요하다.

경제부문 승인통계에서 작성중인 조사항목 중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한 항목을 살펴봤다.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인 이유는 조사표를 설계할 때 행정자료 활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에서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은 조사항목 설계 방식에 따라 완전히 가능한 조사항목과 부분만 가능한 조

사항목으로 나뉜다. 또한 승인통계별 목적과 특징에 따라 행정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세분화된 항목들도 다수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승인통계 현황 분석을 통해서 조사항목 설계 양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행정서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유사하게 설계한 문항은 행정자료 대체율이 높고, 큰 항목 위주의 기본항목(매출액, 영업비용 등)으로 설계한 문항은 전체 수치에 대한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하며, 승인통계 특성에 따라 작성된 조사항목(정보보호산업 매출액 등)은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

승인통계에서 주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실적 항목은 대부분 기업 전체에 대한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항목이다. 또한 큰 카테고리 아래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며 집계항목 선정을 위해 행정자료 레이아웃을 확인하여 조사항목을 확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실태조사 작성 사례를 통해서 사업실적 분야의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을 살펴봤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내 큰 카테고리 항목의 경우 두 자료에서 큰 차이가 없어 행정자료 대체가 가능한 정도임을 확인했다. 큰 카테고리 하위에 있는 세부 항목들 역시 집계가 가능하지만 일부 조사항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자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자료 간 매칭을 통해 조사항목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통계 작성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자료 입수를 위한 행정서식과 조사항목 간의 연계·개선을 통해 조사항목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입수·관리되고 있는 행정자료 외 추가 행정자료를 입수하여 분야별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수된 행정자료의 연계·가공·개선·개발을 통해 조사항목 대체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경제통계의 사업실적 부문에 대한 행정자료와 대체 가능한 조사항목에 대해 살펴봤다. 향후 조사통계의 행정자료 대체의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종사자) 부문, 사회조사 인구 분야 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4일 접수, 2023년 1월 27일 수정, 2023년 4월 3일 채택)

참고문헌

- 김낙년 (2020). 가계조사의 행정자료에 의한 보정(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39-61.
- 박범수, 통계적 방법을 통한 행정자료와 조사자료의 매칭(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18), 48.
- 박형준 (2022). 행정자료를 이용한 소득 정보 구성(국세 과세 미시자료의 활용 사례), 한국사회정책, 제29권 제2호, 79-113.
- 안태현,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방법 개선 방안 연구(광업제조업조사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4), 56.
- 오승철,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국세청 과세자료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9), 89.
- 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제27권 제1호, 5-37.
- 이영섭, 김선웅, 안홍엽, 임경은, 김희경 (2009). 통계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통계적 매칭기법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2009), 제14권 제1호 82-98
- 이은경, 행정자료를 이용한 농업통계 작성 방법의 선진화 방안(어업총조사와 어업경영체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7), 46.
- 이의규 (2018). 행정자료 우선활용 가이드라인(통계작성기관 자체진단용), 통계개발원
- 이정수,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주택총조사 개선 방안(건축물대장자료 중심)(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2009), 58.
- 임주원,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교차검증(개인사업체의 매출액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5), 66.
- 중소기업중앙회 (2020). 중소기업실태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
- 통계교육원 (2020). 빅데이터와 행정자료 이해, 통계교육원 교재, 통계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통계청.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www.narastat.kr>)

A Study on the Questionnaires that can be replaced with Administrative Data (Focusing on result of business items)

Seong Ryul Park⁶⁾

Abstract

The statistical writing system is rapidly changing from the survey base to the administrative base. The statistics creation agency that prepares national statistics is trying to write statistics by using its own administrative data managed from the inside, but there is a limit to writing statistics using only administrative data managed by a single institution. The linkage of administrative data should be disclosed enough information in utilizing administrative data produced by other institutions, but it is still a reality that information on administrative data is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ormation of administrative data by sector(results of busines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data in the preparation of national statistics. In addition, administrative data related to the survey items of each statistics that are actually being written are presented. This study is to help statistical producers understand administrative data and provide guidelines for alternative methods of administrative data survey items.

Key words : administrative data utilization system, administrative form,
administrative data, survey item, replacement,
results of business

6) Statistical Methodology Division,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Statistics Korea, 6F, Statistical Center, 713 Hanbatdaero, Seo-gu, Daejeon 35220, E-mail : srpark08@korea.kr